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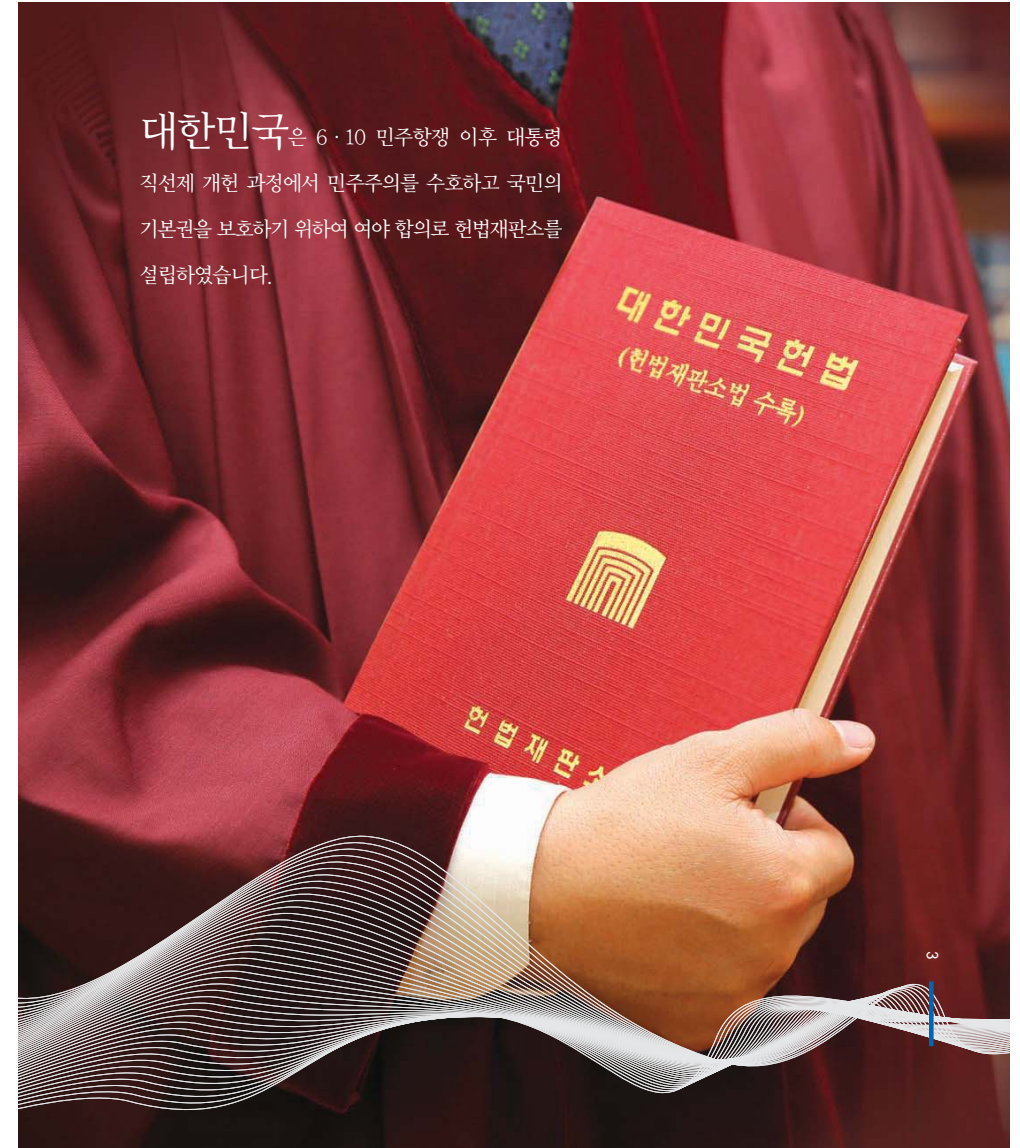
## 목차

<p>03 <b>화보</b></p> <hr/> <p>14 <b>헌법재판소 발전과정</b></p> <p>14 1기 정착기(1988. 9. ~ 1994. 9.) 헌법재판소의 기초를 다지다</p> <p>16 2기 안정기(1994. 9. ~ 2000. 9.) 헌법재판, 국민에게 다가가다</p> <p>18 3기 도약기(2000. 9. ~ 2006. 9.) 다양한 결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앞장서다</p> <p>20 4기 국제화기(2006. 9. ~ 2012. 9.) 국제협력을 확대·강화하다</p> <p>22 5기 재도약기(2012. 9. ~ )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로 도약하다</p>	<p>24 <b>한눈에 보는 헌법재판소</b></p> <p>24 청사의 변천</p> <p>26 사건 접수로 보는 헌법재판의 활성화 과정</p> <p>28 사건 배당의 변화</p> <p>30 조직의 발전과정</p> <p>31 도서관의 발전과정</p> <p>32 헌법재판 정보화의 발전과정</p> <p>34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p> <p>36 상징·기념물</p> <p>38 헌법 자료·발간물</p> <p>40 눈여겨볼 심판사건 기록</p> <hr/> <p>42 <b>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b></p>
---	---

대한민국은 6·10 민주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를 설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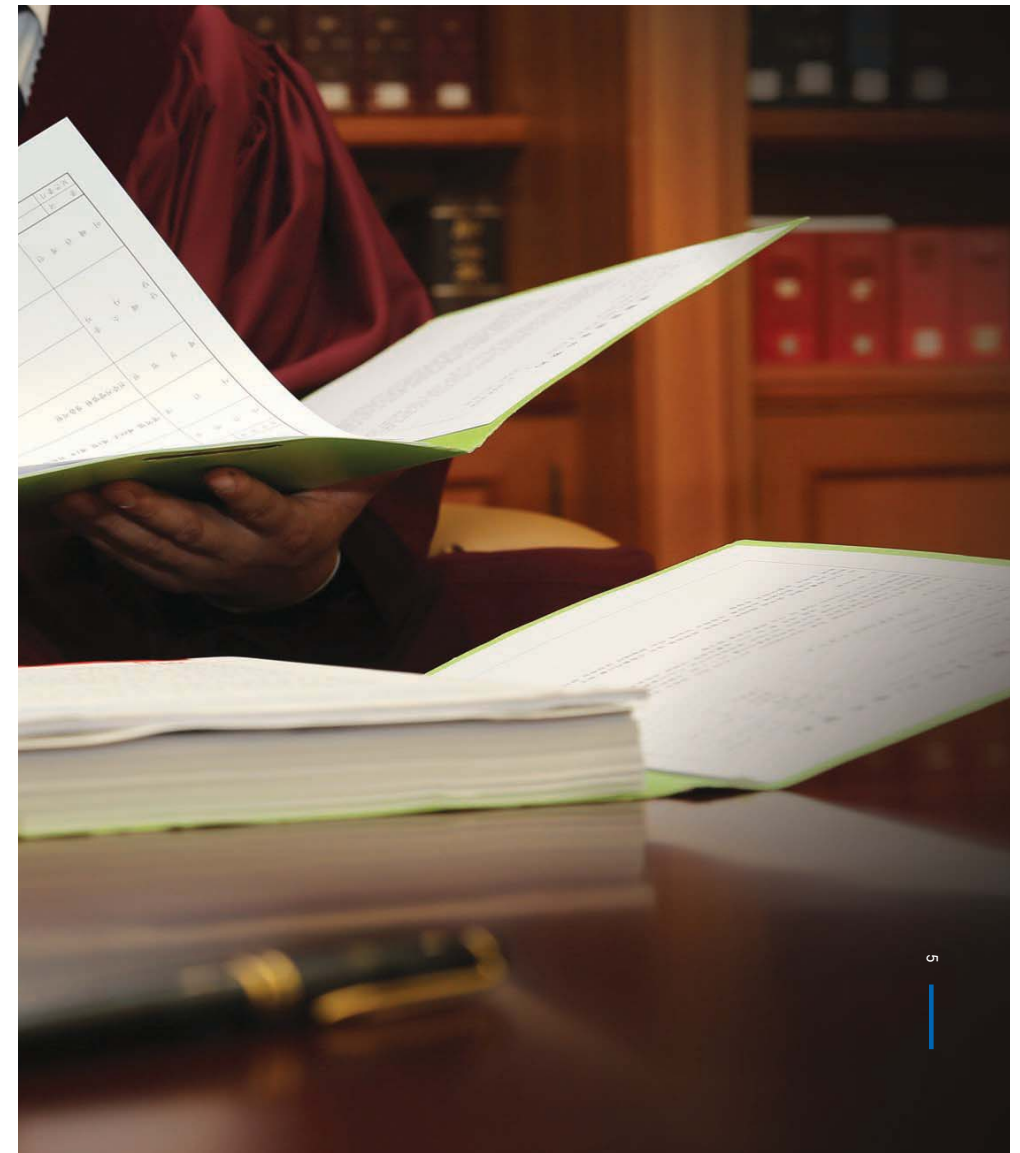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수록)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이견과 분쟁을 헌법규범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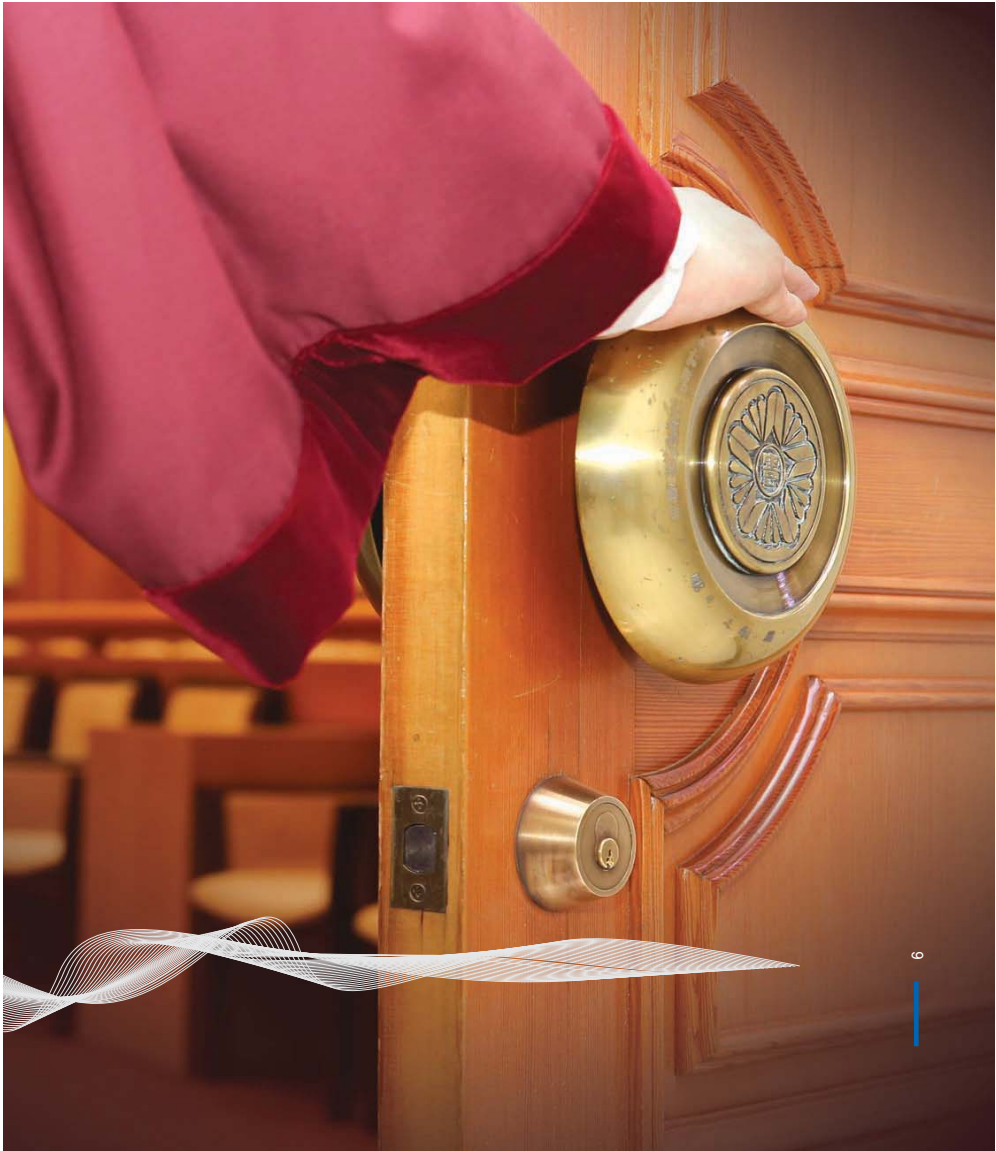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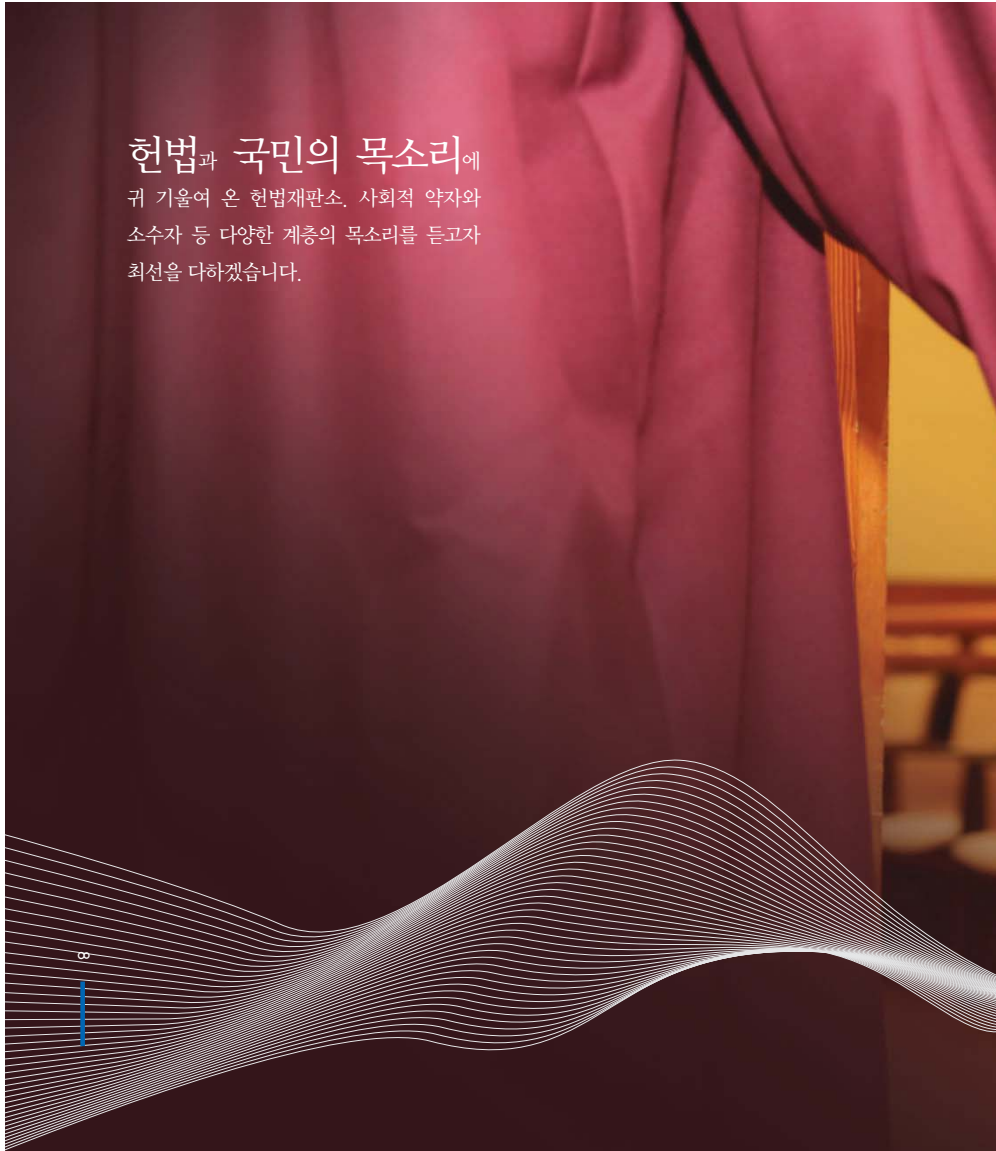


헌법재판관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항상  
고뇌하고 성찰하며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  
사건에 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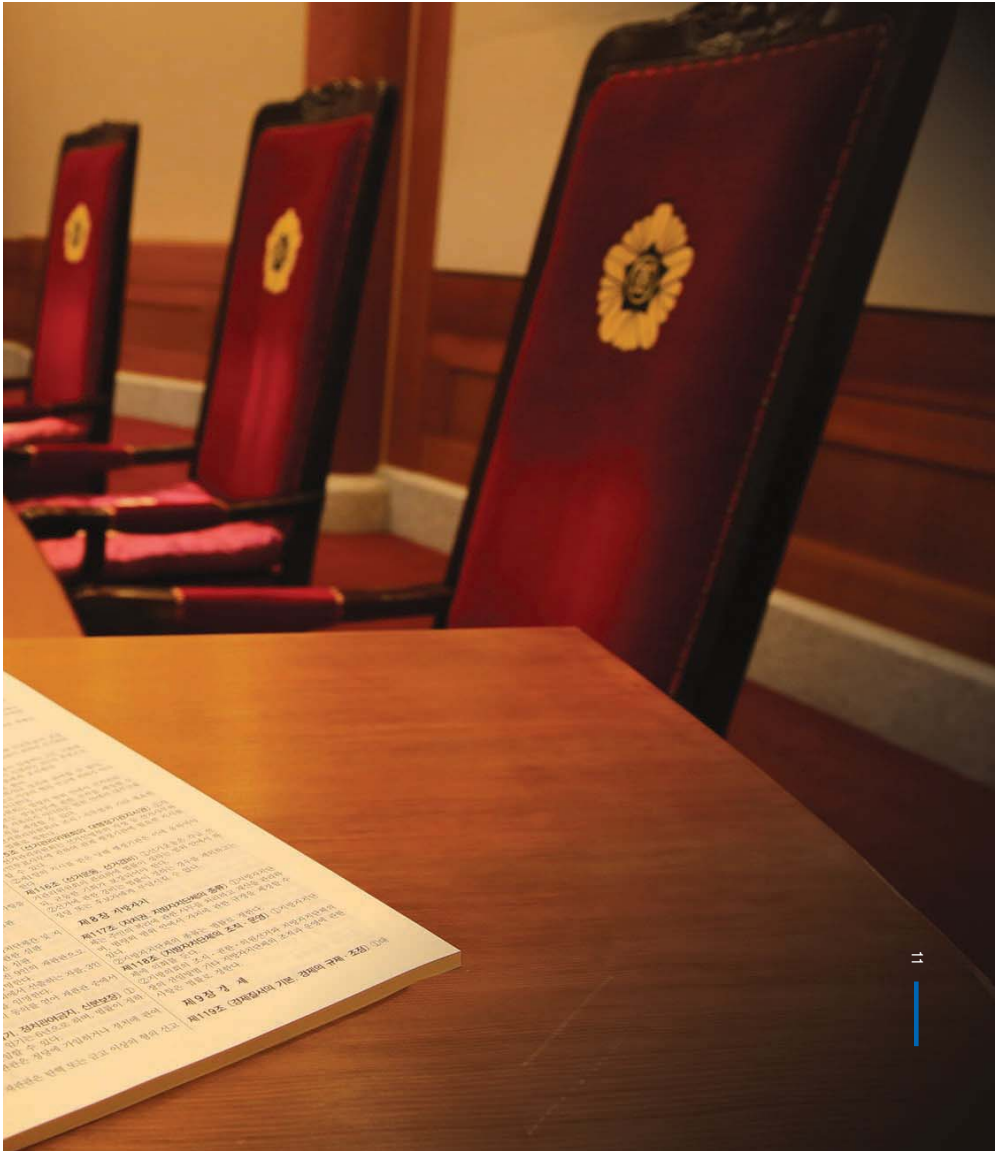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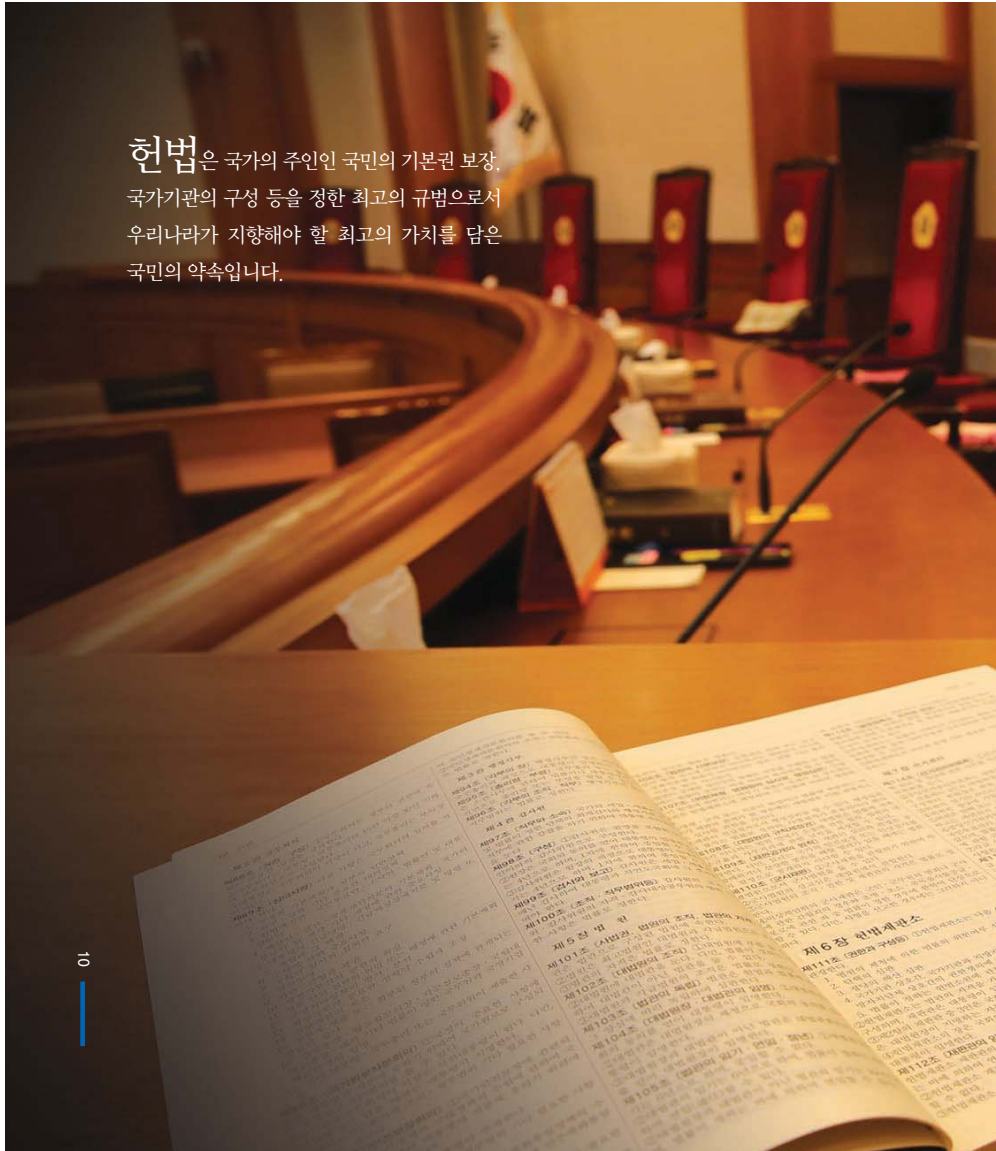


## 헌법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의 구성 등을 정한 최고의 규범으로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담은 국민의 약속입니다.



1988년 설립된 이래 헌법의 엄정한 해석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지속적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기 정착기(1988. 9. ~1994. 9.) 헌법재판소의 기초를 다지다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창립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40년간 단 4건의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의 불모지였으므로 가장 큰 문제는 헌법재판의 활성화였다.

1기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근거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전체 사건의 60~70%가 될 정도로 헌법재판 활성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법률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이론

구성을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위헌선언 등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창립 1년도 되기 전에 300여 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다.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부는 독일 등 헌법재판 선진국의 판례를 폭넓게 연구·조사하고 격렬한 토론을 통해 헌법재판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였다.

국제교류도 시작하여 유럽헌법재판소장회의 참가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시찰 등 국제 헌법 재판기관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 1기 재판부 주요사건

- 헌재 1989. 3. 17. 88헌마1 사법서사법 헌법소원 사건
- 헌재 1989. 7. 14. 88헌가5등 사회보호법상 필요적 보호감호제도 사건
- 헌재 1989. 9. 4. 88헌마22 임야조사서 열람신청 사건
- 헌재 1989. 9. 8. 88헌가6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사건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사건
- 헌재 1992. 4. 14. 90헌마82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연장 사건
- 헌재 1992. 12. 24. 92헌가8 중형 구형 시 석방 제한 사건
- 헌재 1993. 7. 29. 89헌마31 국제그룹 해체 사건
- 헌재 1993. 12. 23. 93헌가2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 헌재 1994. 7. 29. 92헌바49등 토지초과이득세 사건



- 1. 정동청사 헌관식(1988. 9.)
- 2. 정동청사
- 3. 1기 재판부 회의 모습
- 4. 최초 위헌선언 사건 선고(1989. 1. 25.)
- 5. 을지로청사 개청식(1988. 12. 27.)
- 6. 국회발치기 사건 국회 헌정검증(1993. 8. 24.)
- 7. 창립 1주년 기념식(1989. 9. 19.)
- 8. 재동청사 기공식(1991. 3. 13.)



## 2기 안정기(1994. 9. ~ 2000. 9.)

### 헌법재판, 국민에게 다가가다

2기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5·18특별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는 한편, 사회 공동체의 전통보다 개인의 존엄과 행복을 우선시한 동성동본금혼 헌법불합치 결정,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보장한 영화검열 위헌 결정 등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 헌법의 통제가 미치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은 헌법재판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였고, 국가기관도 그 행위에 위헌성이 없는지 사전 점검하는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국제적으로는 한국 헌법재판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발전된 제도와 운영을 참고하고자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유럽헌법재판소장 회의에 참석하고, 미주 지역의 헌법재판제도를 시찰하였으며, 2000년에는 제43차 베니스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베니스위원회와 교류를 시작하였다.

1. 2기 재판부 심판사건 선고(1995. 2. 23.)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장(Jutta Limbach) 일행  
접견(1998. 8. 31.)

3. 베니스위원회 참석(2000. 6.)

4. 러시아최고법원장(Vjacheslav M. Lebedev)  
일행 접견(1995. 7. 14.)

5. 캐나다대법원장(Beverly McLachlin) 접견  
(2000. 9. 7.)

6. 중국최고인민법원장(任建新) 일행 접견  
(1996. 5. 22.)



### 2기 재판부 주요사건

현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위헌확인 사건
현재 1996. 2. 16. 96헌가2등	5·18특별법 사건
현재 1996. 10. 4. 93헌가13등	영화검열 사건
현재 1996. 12. 26. 96헌가18	자도(自道) 소주 구입제도 사건
현재 1997. 7. 16. 95헌가6등	동성동본금혼 사건
현재 1997. 7. 16. 96헌라2	법률안 변칙 처리 사건
현재 1997. 11. 27. 94헌마60	수사기록 열람 사건
현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재판소원 허용 사건
현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그린벨트 사건





탄핵 기각...  
盧대통령 직무 복귀



### 3기 도약기(2000. 9. ~ 2006. 9.)

#### 다양한 결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앞장서다

3기 재판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행정수도 이전 사건, 국군 이라크 파병 사건을 헌법 규범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조속히 진정시켰다. 이런 중요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재판이 급격하게 활성화 되었고 국가기관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의 1인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 사건, 국회의원 선거구의 과도한 인구 편차 사건, 국회의원 임후보자 기탁금 사건 등을 통해 민주주의 선거방식을 정착시켰다.

또한 영상물 등급분류보류 위헌 사건, 인터넷상 불온통신 금지 사건 등의 위헌결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유치장 내 화장실 사건, 신체 과잉수색 사건,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 사건, 불구속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거부 사건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형사피의자와 수형자의 기본권을 신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99년 베니스위원회의 옵저버로 가입한 이후 헌법재판 및 법치주의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2006년 6월 베니스위원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1·2. 행정수도 이전 사건 선고(2004. 10. 21.)
- 3.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선고(2004. 5. 14.)
- 4. 유럽인권재판소정(Luzius Wildhaber) 일행 집견(2003. 4. 13.)
-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정(Hans-Jürgen Papier) 집견(2005. 11. 17.)
- 6.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2004. 10. 2.)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



**3기 재판부 주요사건**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영상물 등급분류보류 위헌 사건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인터넷상 불온통신 금지 사건
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신체 과잉수색 사건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국군 이라크 파병 사건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불구속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거부 사건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행정수도 이전 사건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호주제 사건
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 사건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자녀의 부(父) 성분 사용 사건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입개정 때까지만 효력인정



국회 차리 불인정  
헌재 결정 주요정기



## 4기 국제화기(2006. 9. ~ 2012. 9.)

### 국제협력을 확대 · 강화하다

4기 재판부는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 결정 위헌확인 사건,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사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 등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베니스위원회 총회에 매년 참석하였고, 2007년 당시 사무총장인 부키키오(Gianni Buquicchio) 현 집행위원장, 당시 헌법부장인 뒤르(Schnutz Rudolf Dürr) 현 사무총장이 한국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등 베니스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2007년 10월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과 함께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하여 2010년 7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창설하였고, 2012년 5월 세계 30여 개국 헌법재판기관을 서울로 초청해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9년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은 헌법재판의 발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10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를 출범시켰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개최되는 제3차 총회 개최를 한국에 유치하였다.

1. 4기 재판부 심판사건 선고(2009. 5. 28.)  
2. 헌법재판연구원 개원식(2011. 1. 10.)  
3.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 제2세션(2008. 9. 3.)

4.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의 개최식(2008. 9. 1.)  
5. 러시아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의 참석(2011. 10. 27.)

6.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열렬법  
7.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참가자 방문(2012. 5. 22.)



### 4기 재판부 주요사건

- |                  |             |                           |
|------------------|-------------|---------------------------|
| 현재 2007. 8. 30.  | 2004헌마670   |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위헌확인 사건 |
| 현재 2008. 5. 29.  | 2007헌마1105  |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사건       |
| 현재 2008. 7. 31.  | 2004헌마1010등 | 태아성별고지 금지 사건              |
| 현재 2009. 5. 28.  | 2006헌바109등  | 음란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건           |
| 현재 2009. 6. 25.  | 2007헌바25    | 미결구금일수 재량산입조항 사건          |
| 현재 2009. 9. 24.  | 2008헌가25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
| 현재 2009. 11. 26. | 2008헌바58등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
| 현재 2010. 12. 28. | 2009헌가30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사건  |
| 현재 2010. 12. 28. | 2008헌바157등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투신 금지 사건     |
| 현재 2012. 8. 23.  | 2010헌마47등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 사건        |





## 5기 재도약기(2012. 9. ~)

###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고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로 도약하다

5기 재판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및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등 국가적으로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사건, 김영란법 사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분열된 사회의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춰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사실상의 창립총회인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독일과 미국 중심의 헌법재판제도와는 차별화된 한국 헌법재

판제도의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며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4년 12월 비즈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5년 12월 비즈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고, 2017년 12월 연임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에 한 명의 대리위원이 추가 배정되었다.

2016년 8월 제3차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에서 연구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여 2017년 1월 서울에 연구사무국을 개설하였으며,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1.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출범기념식(2017. 1. 2)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식(2017. 10. 31)
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선고(2014. 12. 19)
4. 헌 재판부 변론(2017. 12. 14)
5.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3차 총회 세션(2016. 8. 11)
6.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연례법
7.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폐회식(2014. 9. 30)



#### 5기 재판부 주요사건

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유신헌법 긴급조치 사건
헌재 2014. 3. 27. 2010헌가2등	야간 시위금지 사건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간통죄 위헌 사건
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 미비 사건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처벌 사건
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사건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건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5인 이상 인력고용 강제 사건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 청사의 변천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출범 당시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정동빌딩 내의 사무실 일부(16층과 18층 약 790㎡)를 임차해 청사로 사용하다가, 그 해 12월 서울 중구 을지로 5가의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현재의 재동청사는 1993년 6월 서울 종로구 북촌로

16,806㎡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하여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독립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1층에 대심관정과 대강당을 배치하여 외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등 1993년 10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을지로청사

(1988. 12. 27. ~  
1993. 5. 31.)

### 정동청사

(1988. 9. 15. ~  
1988. 12.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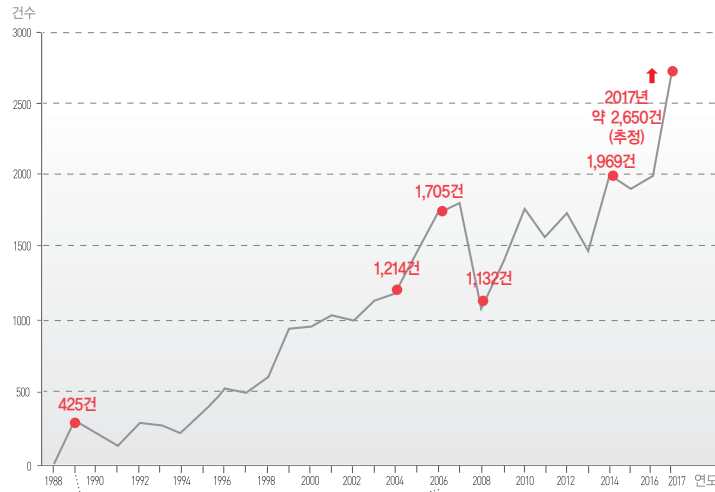
### 재동청사

(1993. 6. 1. ~)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 사건 접수로 보는 헌법재판의 활성화 과정



**1989년 425건**  
헌법소원에 불기소사건이 포함되면서 헌법재판이 크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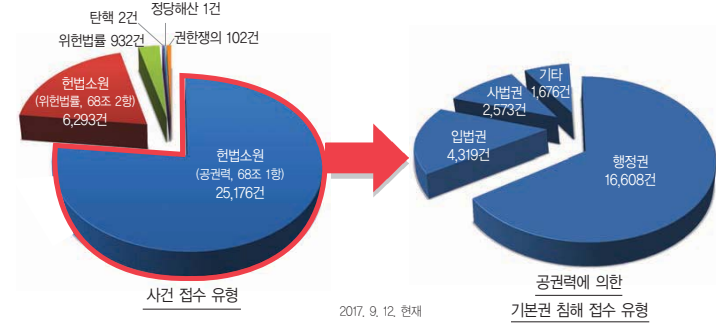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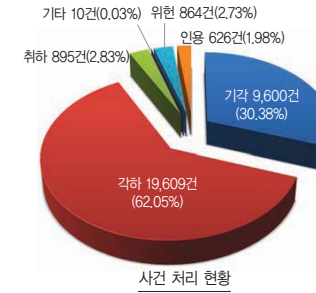
**2006년 1,705건**  
2004년 탄핵 사건 및 수도 이전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사건수 급증

**2008년 1,132건**  
2008년 재정신청 확대로 사건수 감소

**2017년 약 2,650건(추정)**  
2014년 정당해산, 2017년 탄핵사건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며 사건수 급증

감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계기로 사건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04년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과 행정수도 이전 사건으로 헌법재판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2006년에는 사건수가 1,700건을 넘었다.

2008년 재정신청 확대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사건이 크게 줄었으나, 2014년 정당해산 사건과 2017년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의 영향으로 사건이 폭증하였다.



### 불기소 사건 접수 현황

연도	1988	1994	2000	2007 (2006)	2008	2012	2017. 9. 12. 현재
계	8	269	780	1,682 (1,534)	925	517	619

###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연도	1988	1994	2000	2007 (2006)	2008	2012	2017. 9. 12. 현재
계	3	35	208	404 (432)	149	173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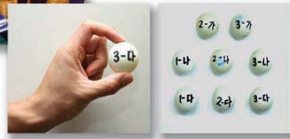
\* 본인사건 청구부적법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선임율은 약 90%임.  
2008년 재정신청 확대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이 대폭 감소하여 선임건수도 감소

## 사건 배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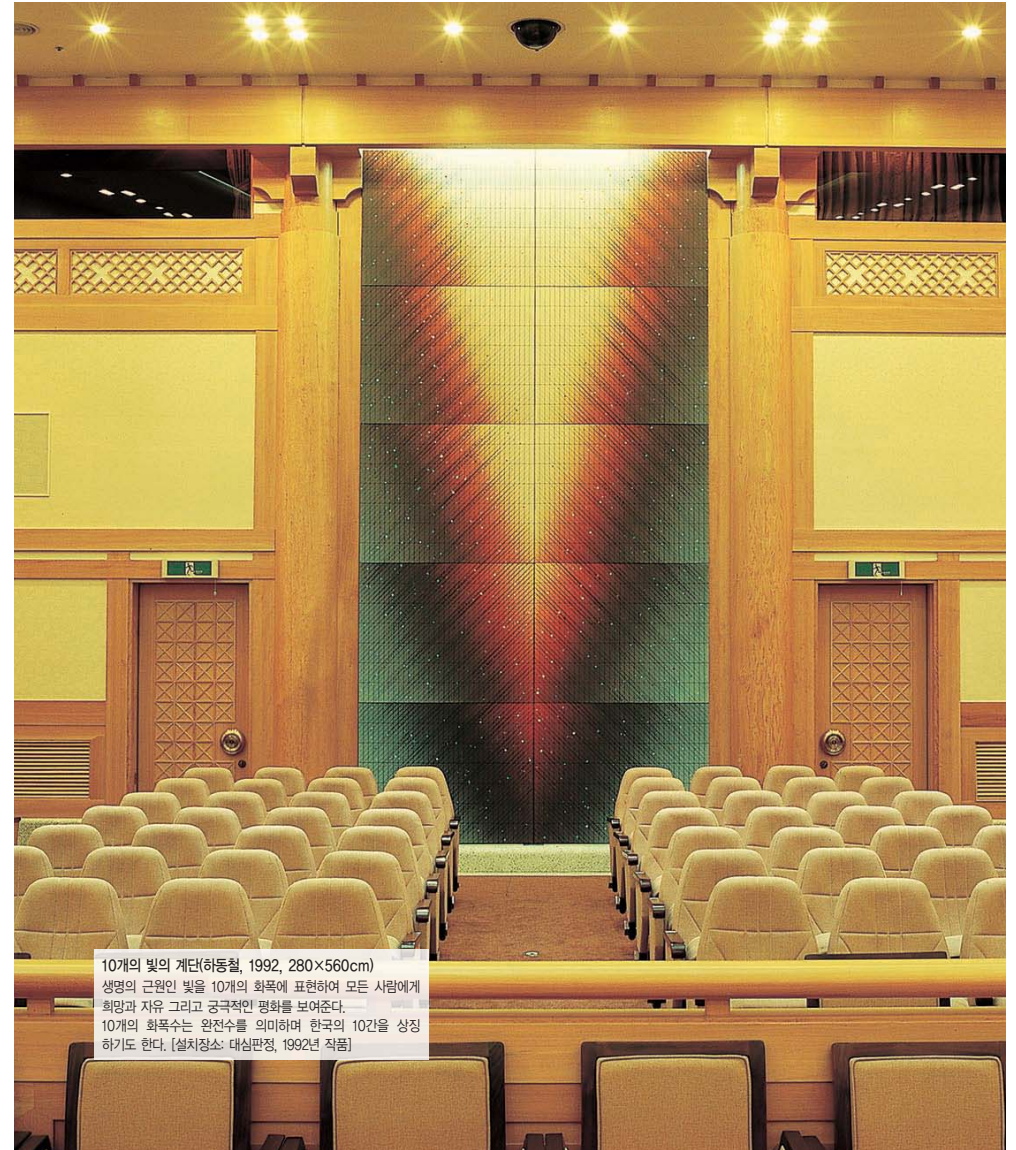


물레 배당장면(1995.)

출범 초기에 사건배당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 사건의 접수 및 배당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였다. 재판관 8명(재판소장 제외)의 주심기호를 표시한 탁구공을 물레통에 넣고 돌려서 탁구공이 나오면 그에 따라 주심을 배당함으로써 배당과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였다.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배당시스템으로 배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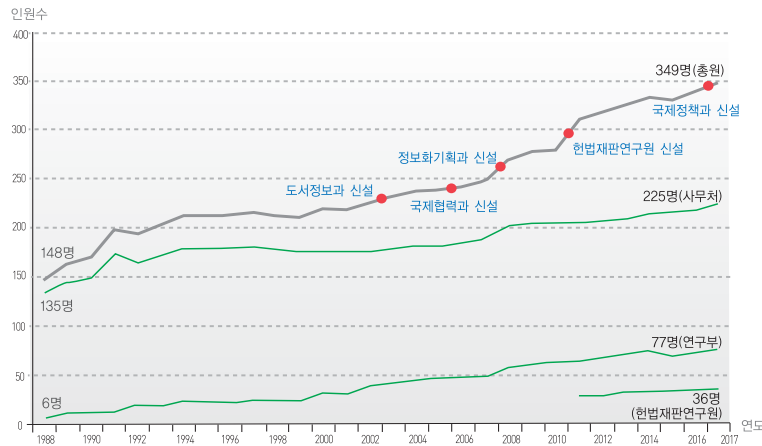


현재의 전자 배당장면



10개의 빛의 계단(하동철, 1992, 280×560cm)  
 생명의 근원인 빛을 10개의 화폭에 표현하여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자유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를 보여준다.  
 10개의 화폭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며 한국의 10간을 상징하기도 한다. [설치장소: 대심판정, 1992년 작품]

## 조직의 발전과정



연도	총계(총원)	정무직(정원)	사무처(정원+기타직)	헌법연구원(원원+파견)	재판연구원
1988	148	7	135	6	
1994	213	10	180	23	
2000	220	11	177	32	
2006	243	11	185	47	
2012	319	11	208	70	30
2017	349	11	225	77	36

헌법재판의 활성화로 1991년 11월 비상임재판관이 상임화되었다.

연구부는 1988년 창설 당시 자체 연구관 3명, 파견연구관 3명 총 6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2배 이상 늘어난 77명으로 연구역량이 늘어났다.

사무처는 처음 135명으로 시작하여 도서정보과, 국제협력과, 정보화기획과, 국제정책과 등이 연차적으로 신설되면서 현재 225명에 이르고, 2011년에는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정원 30명이 증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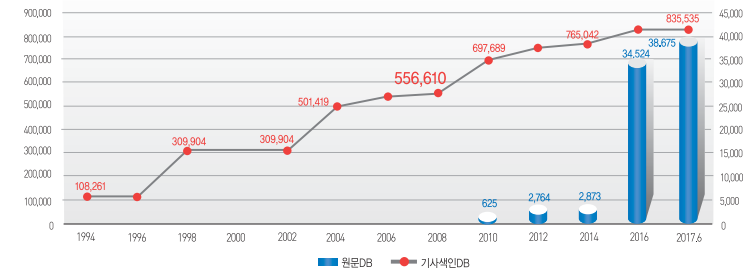
## 도서관의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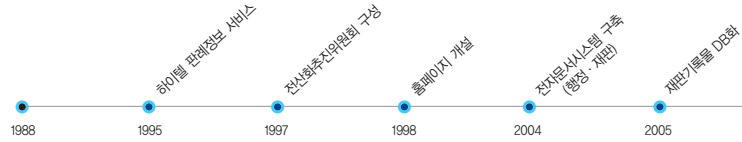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1988년 12월 설치된 이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 발전해 왔다. 자료 대출/반납업무 자동화는 물론, 학술 웹DB 및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자원 동시 검색서비스 등 새로운 정보환경과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헌법재판과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1988. 12. : 을지로청사에 도서관 설치(약 99㎡)
- 1993. 6. : 재동청사에 도서관 설치(1,242㎡)
- 2009, 2015.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2013. 12. : 청사 증축사업(도서관) 추진 확정
- 2017. 9. : 법률자료 등 14만 3천여권 장서 소장

원문 및 기사색인 DB 구축현황



## 헌법재판 정보화의 발전과정



홈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헌법재판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헌법재판업무를 투명하게 알리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2013년에 도입한 전자심판정은 기록의 열람·조회에 소요된 시간을 대폭 줄여 변론의 효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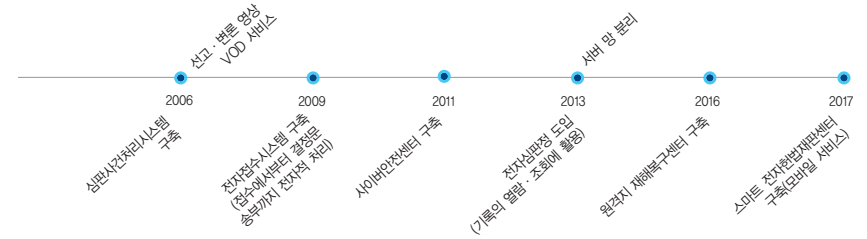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최초 홈페이지(1998.)

전자심판시스템·보안



전자심판정시스템



심판사건분석시스템





## 세계 속의 헌법재판소

### 베니스위원회

1999년 베니스위원회의 옵저버로 가입하고 2000년에 김용준 소장이 제43차 베니스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이후 부키키오 당시 사무총장과 뒤르 당시 헌법부장이 200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 참석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정위원 1인과 대리위원 2인을 두고 있다.

2013년 강일원 재판관이 정위원을 맡은 후 2014년 12월 2일 임기인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5년 12월 2일 임기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2017년 12월 연임되어 활동 중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우리 재판소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 명의 대리위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김용현 사무처장이 대리위원을 맡았다.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2007년 10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함께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설 준비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하여 2010년 7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을 창설하였고, 2012년 5월 세계 30여 개국 헌법재판기관을 서울로 초청해 역사적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 8월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AACC) 제3차 총회에서 연구



1. 베니스위원회의 사무총장(Gianni Buquicchio) 일행 접견 (2007. 10. 9.)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 환송인찬 참석 (2016. 8. 12.)
3.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2014. 9. 29.)

4.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2017. 10. 7.)
5. 유럽인권재판소 방문(2017. 12. 21.)
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방문-세미나 교류(2015. 10. 30.)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2017년 1월 서울글로벌센터에 AACC 연구사무국이 문을 열었다. AACC 연구사무국은 회원기관들로부터 파견자를 받는 등 AACC 회원기관들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 자문기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계헌법재판회의

세계헌법재판회의는 2009년 헌법재판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신장한다는 목표하에 공통의 현안과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의 기간에 세계헌법재판회의의 창설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출범 초기부터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4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춰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사실상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수준 높은 재판능력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헌법재판소는 독일과 미국 중심의 헌법재판제도와는 차별화된 한국식 헌법재판제도 및 그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오늘날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상징 · 기념물



**구(舊) 휘장**  
헌법재판소는 1988년 12월 5일 헌법재판소내규 제1호로서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에 관한 내규를 제정·시행함으로써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기와 휘장이 확정되었다.



구(舊) 배지      신(新) 배지



구(舊) 기

헌법재판소의 상징



신(新) 휘장

기 및 휘장의 도안이 변경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기 및 휘장에 관한 내규도 개정되었다(2017. 8. 23.)



**신(新) 기**  
헌법재판소 기는 헌법재판소장 직무실, 헌법재판소 건물 등에 게양하고, 그 관리 및 게양시간은 대한민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기의 무궁화 문양은 헌법재판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헌법재판소 심판정 및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키오스 버튼과 타이핀

**재판관의 법복**  
법복의 색깔은 헌법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자주색으로 하였고, Y자형의 우단은 헌법·법률 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의를 상징한다. 헌법재판소 창립 초기부터 현재의 법복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2007년 12월 12일 '헌법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율하였다.



창립 1주년 기념 우표(1989.)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우표 안내서(1989.)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도자기(1989.)



창립 10주년 기념 편지시(1998.)

헌법재판소의 각종 기념물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엽서 및 봉투(1989.)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엽서(2014.)



재동청사 신축 기념품-문진(1993.)



업무일지(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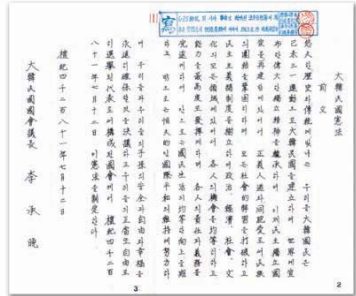


나무 헌법-정동청사(1988.)

헌법자료 · 발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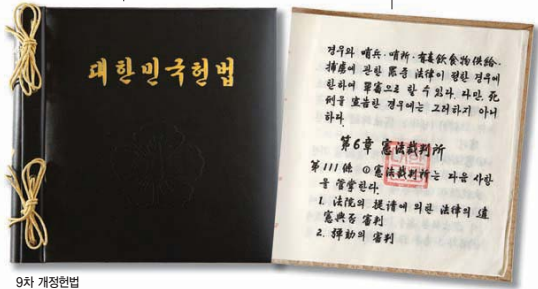


**유진오 개헌헌법 초안**  
1948년 조선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 위원이었던 헌법학자 유진오(1906.~1987.)가 육필로 200자 원고지 70여 장에 메모 형태로 작성한 헌법초안  
[소장처: 고려대박물관]



**제한헌법 필사본**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제한헌법'의 필사본으로 원본은 분실 추정.  
1963년 법제처에서 관보 등의 근거서류를 토대로 제작 [소장처: 국가기록원]

헌법 자료



**9차 개정헌법**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모두 9차례의 헌법개정을 거쳤다.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에는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해왔다.  
[소장처: 국가기록원]



최초의 발간물(1988. 12. 3.)  
헌법재판소 창립과 더불어 처음으로 제작·발간된 팸플릿



헌법재판소판례집(1990.~)  
헌법논총(1990.~)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3.~)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급판(1989.~)  
헌법재판자료집(1989.~)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1989.~)

헌법재판소의 주요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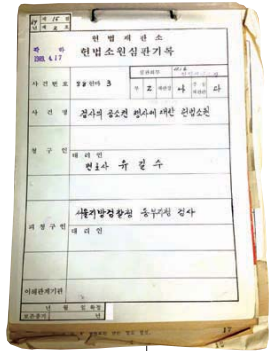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공보(1993.~)  
헌법재판소판례의 신속한 소개와 홍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발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청사건관리제(1994.)  
헌법재판소 10년사 한글판(1998.)  
헌법재판소 10년사 영문판(1998.)  
헌법재판소무제요(1998, 2003, 2008, 2015.)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1994, 2000, 2006, 2013, 2017.)  
헌법재판소 20년사 한글판(2008.)  
헌법재판소 20년사 영문판(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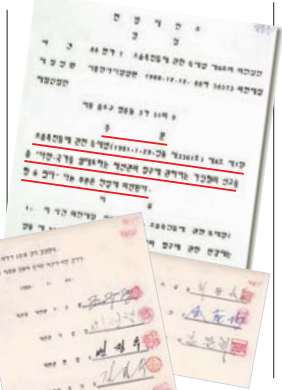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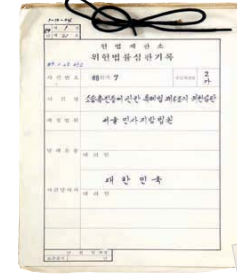
# 심판사건 기록



제 11조 제 1항 및 제 30조 (의 기간과 결의 심판, 신청에 의한) 의견을 받은 경우(제 규정한 조항의 위헌 또는 법 집행의 정지)를 의결하는 기록을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결의의 가의결단 수가 또는 반대의 의견이 불충분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결은 결은 결'과 같이 하는 것은 '결의결단'이 기록으로 기록되는 헌법 제 11조에 결단 법 집행의 정지권을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제 27조 제 5항을 신청자가 당사적격자의 제정결의 의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의서는 법원이 결의 결단을 할 때 당사적격자의 진술을 정하게 하는 것임과 결단한 결단을 작가가 결의는 것을 포함 뿐만 아니라 의의가 당사적격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정당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줄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임결의 기록을 포함한 정당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86헌다3) 기록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최초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한 사건(1989. 4. 17.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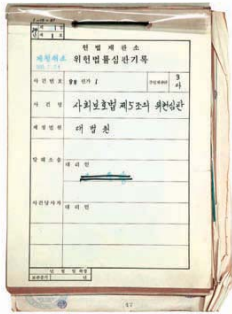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90헌바1) 기록  
소송등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1990. 1. 10. 접수), 최초의 위헌심판형 헌법소원 사건

위헌법률심판(88헌가7) 기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1989. 1. 25. 선고, 최초의 위헌결정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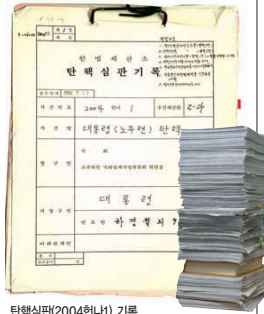
88헌가7의 결정문 →

## 헌법재판소 최초의 각종 심판사건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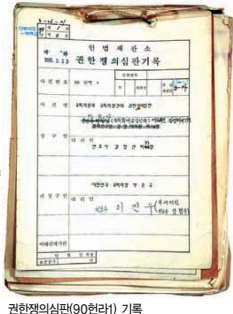
## 헌법재판소 최초의 각종 심판사건 기록



위헌법률심판(88헌가1) 기록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법률심판 사건(1988. 11. 18. 접수),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제청한 사건



탄핵심판(2004헌나1) 기록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2004. 3. 12. 접수), 수차례의 변론을 거쳐 2004. 5. 14. 전국에 TV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청구를 기록하는 중국결정을 선고한 사건



권한쟁의심판(90헌라) 기록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1990. 9. 12. 접수), 국회의 구성원이나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과 및 교섭단체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정당해산 심판(2013헌다1) 기록  
높이 18m, 무게 888kg, 가장 변론을 많이 한 사건(18차 변론, 2014. 12. 19. 선고)





[1기] 왼쪽부터 김영균·이시윤·김진우·이성렬·조규광 헌법재판소장·변정수·한병채·최광률·김문희 재판관



[2기] 앞줄 왼쪽부터 조승형·김문희·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재화·정경식 재판관  
뒷줄 왼쪽부터 이영모·고종석·신창언·한대현 재판관



[3기] 앞줄 왼쪽부터 김영일·한대현·윤영철 헌법재판소장·하경철·권성 재판관  
뒷줄 왼쪽부터 송인준·김효중·김경일·주선희 재판관



[4기] 앞줄 왼쪽부터 김희욱·이공현·이강국 헌법재판소장·조대현·김종대 재판관  
뒷줄 왼쪽부터 목영준·민형기·이동훈·송두환 재판관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 5기 · 현 재판부



[5기] 앞줄 왼쪽부터 이진성 · 이장미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김이수 · 김창중 재판관  
뒷줄 왼쪽부터 서기석 · 안창호 · 강일원 · 조용호 재판관



[현 재판부] 앞줄 왼쪽부터 안창호 · 김이수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 김창중 · 강일원 재판관  
뒷줄 왼쪽부터 이선애 · 서기석 · 조용호 · 유남석 재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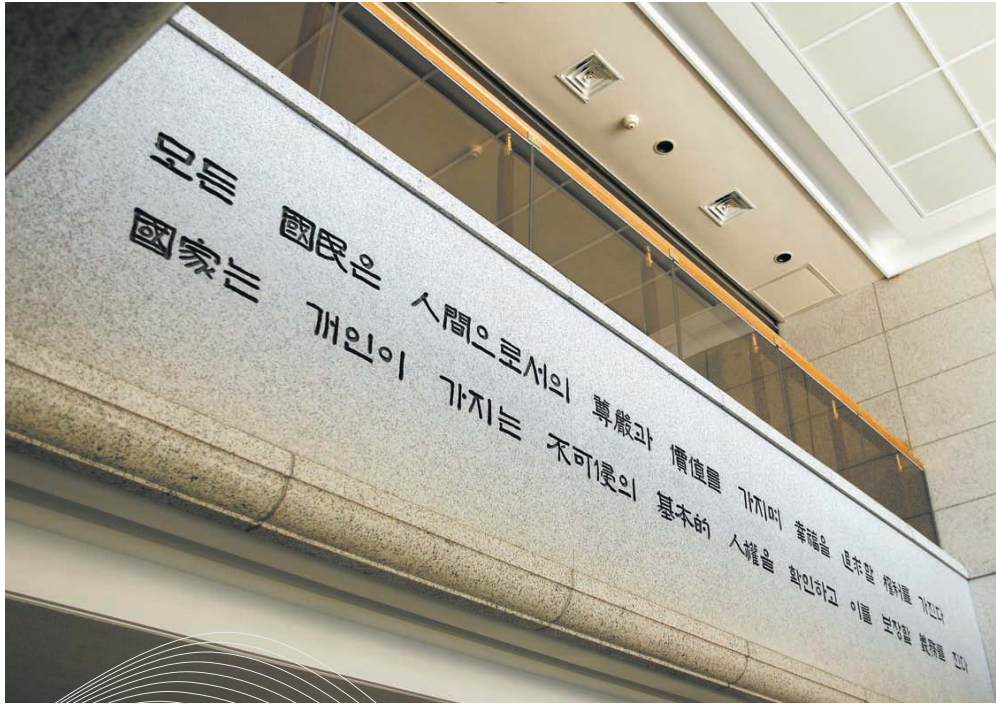


헌법재판소의 사계(오른쪽 위는 옥상정원)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백송(포지 이미지)  
천정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보호수로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백송 중 최고의 백송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TEL 02-708-3456 | FAX 02-708-3566 |  
<http://www.ccourt.go.kr>(새소식, 나의 사건검색, 견학신청, 변론 및 선고동영상, 각종 검색 등)  
전자도서관 <http://library.ccourt.go.kr>  
전자헌법센터 <http://ecourt.ccourt.go.kr>(심판청구서 등의 전자적 제출·송달·조회·출력 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